의 안 번 호	2215	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2. 2.(금) 홍영진 의원 외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19.(월)

2. 제안이유

❍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역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(안 제4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5조 ~ 안 제6조)

다. 지역유산 관련 사업 및 지역유산의 지정 등(안 제7조 ~ 안 제10조)

라. 지역유산의 보존 및 관리(안 제11조 ~ 안 제14조)

마. 지역유산심의위원회(안 제15조 ~ 안 제19조)

4. 근거법규

❍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14조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 및 활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

❍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국가유산기본법

제14조(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·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